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2023. 12. 31

서초구의회

2023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1. 건 명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 유지보수 목적

서초구의회의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HD통합방송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의 영상중계시스템과 카메라, 음향시스템, 회의마이크시스템, 청내방송 송출장치, 발언제어시스템
- 내부(행정망) 인터넷 방송(실시간/VOD)
- 외부망용 인코딩 시스템

나. 과업내용

- 각 영상중계시스템이 해당 회의실의 카메라, 음향시스템과 연동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영상중계시스템에서 송출하는 영상을 인터넷 및 청내 CTAV망으로 원활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지보수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4. 유지보수 방법

가. 유지보수는 장애발생의 미연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유지보수 기간 중 발생한 장애보수를 위한 보수를 포함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서초구의회 방송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초구의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초구의회”의 긴급 요청으로 유지보수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예방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고 보수에 임해야 한다.
- 라. “서초구의회”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를 수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장비에 대하여 최초 설치상태의 규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비의 보수를 위하여 부품을 철거 시 “서초구의회”의 장비에 대하여 대체품을 부착시켜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바. 기타 서초구의회 방송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계약대상자”는 수시 방문·점검한다.(장비의 이상 등으로 “서초구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 후 원격점검 및 방문점검 등 추가 방문한다.)
- 아. 하드웨어 장애 시 “계약대상자”는 월 유지보수료의 5% 이내 소요부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자.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계법령과 우리 의회의 해석에 따른다.

5. 유지보수료

- 가. 유지보수료라 함은 시스템에 투입된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나.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등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서초구의회”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서초구의회”의 요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시스템의 중요한 재구성 및 수리, 교체 시에 과다비용이 산출되는 사유로 인한 부분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다. 다음의 사유(제외사유)로 발생한 시스템의 장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초구의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장애가 발생된 시스템을 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비를 “서초구의회”가 실비로 부담할 수 있다.

- ※ 제외사유 - 천재지변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유지보수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것임을 서초구의회가 인정한 때
- 라. "계약상대자"는 매 분기 말일까지 「유지보수 점검일지」를 제출하고, “서초구의회”는 제출된 유지보수 점검일지의 이행여부를 검사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며 “서초구의회”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6. 계약의 해지

- “서초구의회”은 다음 각 호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철회를 요구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나. 장애복구 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7. 기술지원 및 교육

- 가. “계약대상자”는 Hardware 및 Software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최신의 관련 정보를 “서초구의회”에 제공하며,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인력지원, 자문 등을 “서초구의회”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서초구의회”의 시정에 의한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서초구의회”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 가. “계약상대자”는 서초구(서초구의회)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별첨1)을 준수하여야 한다.<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 준수 및 보안서류(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제출)>
- 다. “계약상대자”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별첨2)을 준수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서초구(서초구의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첨2)의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2)의 (별표2)에 준하는 금액을 유지관리료에서 차감 정산한다.
-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2)의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유지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주인원 및 투입인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나.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한다.
- 다.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한다.

10.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가.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한다.
-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서초구의회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다.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11.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가. 서초구의회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한다.
- 나.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12.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가. 대상 장비의 변경 또는 증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13. 과업의 변경

가. 대상 장비의 변경 또는 증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14. 과업의 해석

가. 이 과업내용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따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계약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15. 변경사항의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서초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보안대책

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 연2회 취약점 점검(포트, 서비스, 계정, 비밀번호, 패치 등)
- 비인가 관리자 계정 삭제
- 초기 제조사 패스워드 변경
- 외부 원격지원 차단
- 윈도우즈 업데이트로 보안패치

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투입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 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별표 1]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별표 2]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초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분서 접근은 금지한다.
-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 [별표 3]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별표 4]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1월 1일부로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3년 12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체명 : (주)제노글로벌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노재남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속 : 서초구의회
직위 : 사무국장
성명 : 조성덕 (서명)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4년 1월 1일부로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2024년 12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직원)

업체명 : (주)제노글로벌
직위 : 차장
성명 : 박 문 희 (서명)
생년월일 : 1977년 8월 13일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속 : 서초구의회
직위 :
성명 : 임 승 아 (서명)
생년월일 : 1977년 11월 9일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4년 1월 1일부로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 (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대표자)

업체명 : (주)제노글로벌
직위 : 대표이사
성명 : 노재남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속 : 서초구의회
직위 : 사무국장
성명 : 조성덕 (서명)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4년 1월 1일부로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 (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극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2023년 월 일

서약자 (용역업체 직원)	업체명 : (주)제노글로벌 직위 : 차장 성명 : 박 문 희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 공무원)	소속 : 서초구의회 직위 : 성명 : 임 승 아 (서명)

< 별표 2 >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자료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 별표 3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 >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직급)	용도	반출·입 일시 (반/출)	확인

* 모든 반입·반출은 별지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별지 1**반입·반출 승인 요청서****■ 일반현황**

소 속	반입 신청자		관리 책임자		비 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 반입 · 반출 · 변경 현황

반입 · 출 일자	사용자 ID	E-Mail	연락처	사용목적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장비사양

컴퓨터 현황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기종	IP	CPU	HDD	OS(BIT)	Serial Number	MAC Address	

■ 점검사항

악성코드 감염 여부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비밀문건 보유(유·무)	기 타

1. 각 해당 부서 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HD통합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주)제노글로벌
직 급 : 대표이사
성 명 : 노 재 남 (서명)

2023 년 월 일

서초구청장 귀하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기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0%이하	계약금의 50%이하	계약금의 25%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분서
9.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3년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발주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사업목적 : 서초구의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HD통합방송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사업내용 : - 각 영상중계시스템이 해당 회의실의 카메라, 음향시스템과 연동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영상중계시스템에서 송출하는 영상을 인터넷 및 청내 CTAV망으로 원활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input type="checkbox"/> ② 국가안보, 차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input type="checkbox"/>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input type="checkbox"/>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input type="checkbox"/>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input type="checkbox"/> ※ 구분 ①~⑦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기관 <input type="checkbox"/>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 직원	20 명
		<input type="checkbox"/> 타 기관 직원	명
	<input type="checkbox"/>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input type="checkbox"/>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input type="checkbox"/>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input type="checkbox"/>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5. 종합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input type="checkbox"/>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2024년 1월 1일

기관장 (직인)